

3.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

가. 외산 이륜차 및 외산 자전거

손해사정금액	수수료 (원)	비 고
100만원 이하	80,000	1. 지방권은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(교통비 : 1Km = 200원) 출발지는 손사사무소 기준(포털 사이트 길찾기 거리) 2. 대중교통 및 출장지 2차 교통비 : 실비 3. 일비 : 2만원, 숙박비 : 4만원
~ 200만원 이하	130,000	
~ 300만원 이하	200,000	
~ 400만원 이하	270,000	
~ 500만원 이하	350,000	
~ 700만원 이하	420,000	
~ 1,000만원 이하	500,000	
~ 2,000만원 이하	800,000	
~ 3,000만원 이하	1,200,000	
3,000만원 이상	1,800,000	

※ 장구류 및 간접손해 제외한 손해액 기준

청구기준이 아닌 과실상계 전 손해사정 금액 기준임

위장사고 적발 건(전부 면책)은 기본수임료의 1.5배를 기준으로 탄력적 적용

나. 이외 일반 피해물

종 목	손해사정 금액	요율(%)	기 준 액 (원)
제1종 피해물 /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경우	1천만원 미만	기본료	660,000
	1천만원 이상 ~ 2천만원까지	5.06	1,012,000
	2천만원 이상 ~ 3천만원까지	4.18	1,254,000
	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까지	3.74	1,870,000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까지	2.88	2,882,000
	1억원 이상 ~	2.2	사전 별도 협의

※ 청구기준이 아닌 과실상계 전 손해사정 금액 기준임

위장사고 적발 건(전부 면책)은 기본수임료의 1.5배를 기준으로 탄력적 적용

다. 손해배상 분쟁 및 소송 진행 건

- Survey 의뢰 피해물의 성격에 따라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결정

4. 손해사정사 위탁 의뢰서

(1) 손해사정 업체 리스트